

전산장비 및 솔루션 통합유지보수 시방서

사 업 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전산장비 및 솔루션 통합유지보수
-------	-------------------------------

2021. 8



I. 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갑' 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이하 '을' 이라 한다)가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대상) 유지보수 대상 품목은 「협회 전산장비 및 솔루션 보유현황」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1. 9.15 부터 2022. 9.14 까지로 한다.
② 계약종료일 이전에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서면문서에 의해 현 체결된 월 유지보수 금액으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표지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다.
② 본 계약금액은 계약대상품목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등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으로 "유지보수료"를 지칭한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기타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계약금액 청구 및 지불) ① '갑'은 '을'에게 계약된 연간 유지보수료를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월별 청구요청에 의하여 월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②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당월 유지보수료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한 일할 비율로 계산한다.
③ '갑'은 동조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당해 장비관리책임자의 확인서(검사조서)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을'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6조(유지보수의 범위) 본 계약의 유지보수의 범위는 '갑'의 대상장비 「협회 전산장비 및 솔루션 보유현황」에 해당하는 모든 장비의 정상가동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에 예방점검, 긴급복구지원, 계약대상 장비 및 S/W의 수리, 부품교체, 기술자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유지보수 용역의 내용)** ① ‘을’은 제2조의 대상시스템을 양호한 상태로 작동 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및 수리를 행하며, 작업내용에 대하여는 ‘갑’의 장비관리책임자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업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정기 점검은 매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을’은 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월말 ‘갑’에게 점검일자, 점검인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예방점검을 월1회이상 실시하고, 연1회 이상 전문청소업체를 통한 장비 청소를 실시하되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 실시일자 및 기간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서버,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대한 유지보수는 점검일시를 맞추어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 ⑤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통보를 받은 후 2시간 내에 작업에 착수하되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장애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⑥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품을 평시 확보하고 유지보수에 응하여야 한다.
- ⑦ 시스템 유지보수시 사용될 교체부품은 기존부품에 비하여 성능 및 품질이 같거나 또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반드시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⑧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추가비용없이 ‘을’이 제공하며 제거된 부품은 ‘을’의 소유로 한다.
- ⑨ S/W에 관한 기술발전(메이저 O/S에 대한 패치 포함)이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관련정보(기술자문 및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하고, 마이너 버전 업(Minor Version Up)된 S/W는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설치하여야 하며 제공된 S/W의 사용권은 ‘갑’에게 있다.

제8조(유지보수요원) ①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요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구분	자격증	실무경력	재직인원	재직증명
서버	-	3년이상	2명이상	공고일기준 재직증명서 및
데이터베이스	OCP 자격증	3년이상	2명이상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 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전담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 동등자격이상의 숙련된 기술자를 재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기타 솔루션 및 장비유지보수 요원의 자격요건은 유지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유지보수 전담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 동등 자격이상의 숙련된 기술자를 재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공시간) 시스템 장애발생시 ‘갑’은 계약기간 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사이에는 언제든지 ‘을’에게 유지보수를 요청(통보)할 수 있으며 ‘을’은 통보받은 후 유지보수에 응하여야 하고 전산시스템의 정상가동이 될 때까지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단, 정규시간외에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갑’이 요청하는 경우에 ‘을’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본 사항은 유지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제7조제5항 및 제16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책임의 제한) ① 본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는 ‘갑’의 명백한 고의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시스템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복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또는 손상이 발생하여도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① ‘을’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보안이행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이나 기밀 시설사항 등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누설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③ 기타 보안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한다.

제12조(계약변경)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시스템 증설로 계약대상이 추가될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해지) ① ‘갑’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상 계약을 위배하여 서면 시정요구 후 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유지보수 지원에 불성실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장비가 관리전환 되었거나 ‘갑’의 예산사정이 변동되어 지속적인 유지보수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갑’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계약해지 1개월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②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의무를 게을리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줄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 ‘갑’에게 계약 보증금으로 계약금 총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현금이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납부한 계약 보증금은 ‘을’이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으로부터 계약이 해지통보되었을 경우 ‘갑’에게 귀속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을’은 제7조제5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초과시간×2.5/1,000×년간유지보수료×1/8)로 계산한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당월 지급하는 유지보수료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을’은 월간 장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하여 (초과시간×2.5/1,000×년간유지보수료×1/8)으로 계산한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당월 지급하는 유지보수료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③ 장애시간이라 함은 장애통보시(구두통보)부터 정상가동 회복시까지를 말하며, 정상가동 회복후 2시간 이내에 장애가 재발시는 최초 장애통보 시각부터 계속된 장애로 본다.

제16조(손해배상책임) ① ‘을’이 유지보수과정에서 ‘갑’의 시스템에 장애를 가중시켰거나 장비를 파손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30일 이내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갑’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이 납부한 계약 보증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이 상계금액에 미달되었을 경우는 ‘갑’은 관련법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7조(위험부담) ‘을’의 유지보수 요원은 계약이행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의 책임으로하며 ‘갑’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8조(권리,의무,양도 및 하도급금지) ①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특정상 하도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 명단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일반사항)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의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의 관할법원 판결에 따른다.

II. 계약특수조건

1. 하드웨어

- ① '갑'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장비 업그레이드 시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발생에 의한 업그레이드는 제외
- ② '갑'의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이관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

2. 소프트웨어

- ① DBMS의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복구(Recover) 지원
- ②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백업 및 복구 지원
- ③ 환경변경에 따른 제품 재설치 및 시스템 구축
- ④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패치 무상 지원
- ⑤ 유선에 의한 문제해결 및 기술지원

3. 재해대비 모의훈련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비 복구시스템을 이용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 ① '을'은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하여 시스템 예비부품을 항상 비축하여 장비 및 부품부족으로 인한 장애복구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비 장애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의 예비 장비로 대체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품은 무상 지원 한다.
- ④ '을'은 '갑'에게 월 1회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관리실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한다.
- ⑤ '을'이 '갑'에게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한다.

- ⑥ 본 계약조건 및 특수사항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⑦ ‘갑’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⑧ ‘을’은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보수 내용 및 범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 ⑨ ‘을’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과 합의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 ⑩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 ⑪ ‘을’은 유지보수 요원들의 비상연락망을 ‘갑’에게 제공하여 원활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